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|--|
| 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I클래스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기구 및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</u></p> | 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I클래스 수익증권 : <u>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30억 이상인 내국법인</u></p> |
| <p>제6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)</p> <p>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액은 <u>제31조</u>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여 정하며,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</p> | <p>제6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)</p> <p>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액은 <u>제29조</u>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여 정하며,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</p> |
| 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표시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발행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</u>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<u>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</u>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u>(신설)</u></p> 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</u>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</u></p> |

| | |
|--|---|
| <p>1. ~ 11. (생략)</p> <p>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<u>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(“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”라 한다. 이하 같다)</u>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</u></p> <p>2. <u>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</u>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<u>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(“실질 수익자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,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p> <p>⑤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</p> | <p><u>법”이라 한다.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u>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<u>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(이하 “수익증권고객계좌부”라 한다)</u>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고객(이하 “투자자”라 한다)의 성명 및 주소</u></p> <p>2. <u>수익증권</u>의 종류 및 수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<u>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④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</p> |
| <p><u>제11조(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)</u></p> <p>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,000좌권, 10,000좌권, 100,000좌권, 1,000,000좌권, 10,000,000좌권, 100,000,000좌권, 1,000,000,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</p> | <p><u><삭제></u></p> |

| | |
|---|---|
| <p><u>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.</u></p> | |
| <p>제12조(수익증권의 재교부)</p> <p>① <u>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(“현물보유수익자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분실·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③ <u>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| <p><u><삭 제></u></p> |
| <p>제13조(수익증권의 양도)</p> <p>① <u>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11조(수익증권의 양도) (조번 변경)</p> <p>① <u>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4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</p> <p>① <u>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제12조(수익자명부) (조번 변경)</p> <p>① <u>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)</u></p> |

| | |
|--|---|
| <p>②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<u>실질수익자</u>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실질수익자</u>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<u>실질수익자</u>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<p>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<u>명부</u>(“<u>실질수익자명부</u>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<u>수익자 및 실질수익자</u>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<u>실질수익자명부</u>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<u>수익자명부</u>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<u>실질수익자</u>는 <u>수익자</u>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<u>수익증권</u>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⑧(생략)</p> | <p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<u>수익자</u>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수익자</u>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<u>수익자</u>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<p>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<u>수익자명부</u>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<u>수익자</u>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<삭제></p> <p>⑦(<u>호변 변경</u>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(생략)</p> | 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(<u>조변 변경</u>) (현행과 같음)</p> |

| | |
|---|---|
| <p>제16조(투자목적) (생략)</p> | <p>제14조(투자목적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<u>투자대상</u>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)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<u>수익증권</u>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</p> <p>7. ~ 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 (조번 변경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<u>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)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<u>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</p> <p>7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<u>제17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| <p>제16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(조번 변경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<u>제15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(생략)</p> | <p>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<u>제18조</u>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</p> | <p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(조번 변경)</p> <p>①<u>제16조</u>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</p> |

| | |
|--|--|
| <p>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<u>제18조</u>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8조</u> 제5호 내지 제9호, <u>제19조</u>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<u>제19조</u> 제2호 본문, 제4호,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<u>제16조</u>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6조</u> 제5호 내지 제9호, <u>제17조</u>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u>제17조</u> 제2호 본문, 제4호,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|
| <p>제21조(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)</p> <p>(생략)</p> | <p><u>제19조(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)</u> (조번 변경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,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,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| <p><u>제20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u> (조번 변경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,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,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p> <p>(생략)</p> | <p><u>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u> (조번 변경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4조(수익증권의 판매)</p> | <p><u>제22조(수익증권의 판매)</u> (조번 변경)</p> |

| | |
|--|--|
| (생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제24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 (생략) | 제22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 |
| 제24조의 3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(생략) | 제22조의 3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 |
| 제25조(판매가격) (생략) | 제23조(판매가격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 |
| 제26조(수익증권의 환매) ① ~ ③ (생략) 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⑥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 | 제24조(수익증권의 환매) (조번 변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삭제> <삭제> <삭제> |
| 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2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 | 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(조번 변경)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|

| | |
|---|---|
| <p>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4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| <p>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4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8조(환매연기)</p> <p>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| <p>제26조(환매연기) (조번 변경)</p> <p>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9조(일부환매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(환매연기총회)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(이하 “정상자산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| <p>제27조(일부환매) (조번 변경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(환매연기총회)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(이하 “정상자산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0조(투자신탁재산 평가)</p> | <p>제28조(투자신탁재산 평가) (조번 변경)</p> |

| | |
|--|--|
| (생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제31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 집합투자업자는 <u>제30조</u> 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~ ③ (생략) | 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(조번 변경) ① 집합투자업자는 <u>제28조</u> 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(생략) | 제30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 |
| 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(생략) | 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 |
| 제34조(이익분배) (생략) | 제32조(이익분배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 |
| 제35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 (생략) | 제33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 |
| 제36조(상환금 등의 지급) ① (생략) ② 집합투자업자가 <u>제46조</u> 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| 제34조(상환금 등의 지급) (조번 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집합투자업자가 <u>제44조</u> 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|
| 제37조(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| 제35조(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(조번 변경) |

| | |
|---|---|
| <p>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 | <p>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8조(수익자총회) (생략)</p> | <p>제36조(수익자총회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9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 ① ~ ④ (생략)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(消却)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37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 (조번 변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삭제></p> |
| <p>제40조(보수) (생략)</p> | <p>제38조(보수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1조(판매수수료) ① ~ ② (생략) 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| <p>제39조(판매수수료) (조번 변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42조(환매수수료) (생략)</p> | <p>제40조(환매수수료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3조(기타 운용비용 등) (생략)</p> | <p>제41조(기타 운용비용 등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</p> | <p>제42조(신탁계약의 변경) (조번 변경)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</p> |

| | |
|--|--|
| <p>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신탁업자의 변경(제45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 3. ~ 9. (생략) <p>② ~ ④ (생략)</p> | <p>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신탁업자의 변경(제43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 3. ~ 9. (현행과 같음)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5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| <p>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(조번 변경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</u> 2.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 3. <u>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</u> <p><u>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대상금액 : 제38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</u> |

| | |
|--|---|
| | <p><u>등)을 포함한다.</u></p> <p><u>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년간.</u> <u>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<u>⑥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제4항 및 제5항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제36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|
| 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(생략)</p> | <p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<u>(조번 변경)</u>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7조(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<u>제46조</u>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-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<u>제46조</u>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.</p> | <p>제45조(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) <u>(조번 변경)</u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<u>제44조</u>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-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<u>제44조</u>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48조(투자신탁의 합병) (생략)</p> | <p>제46조(투자신탁의 합병) <u>(조번 변경)</u>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</p> | <p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<u>(조번 변경)</u></p> <p>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</p> |

| | |
|--|---|
| <p>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.)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(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 ~ ⑩ (생략)</p> | <p>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.)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(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0조(손해배상책임) (생략)</p> | <p>제48조(손해배상책임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(생략)</p> | <p>제49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2조(관련법령 등의 준용) (생략)</p> | <p>제50조(관련법령 등의 준용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3조(관할법원) (생략)</p> | <p>제51조(관할법원) (조번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<신설></p> | <p>부칙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|